Ⅰ.동물보호법 일반

1.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동물보호법 체계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동물의 운송),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2~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관리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2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신고,공고,반환,비용부담,소유권취득,분양·기증,인도적처리 등)
제3장 동물실험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25~28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지도·감독 등)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의 승계)
제5장 영업	제32~35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록,신고,승계),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7~38조(교육,등록취소),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6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42조(수수료), 제43조(청문),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6조의2(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3.「동물보호법」상 동물 및 반려동물의 정의

1) 동물의 정의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식용(食用) 목적을 제외한 파충류·양서류·조류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 법에서는 동물을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곤충, 거미, 오징어, 조개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은 현행「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은「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등은「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야생동물”로 정의하고 있어,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2) 반려동물의 정의

○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의3,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Ⅱ.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정의 및 신고 등

1)「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정의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의2)

2) 신고 등(법 제16조)

○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수의사, 동물변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학대받는 동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법 제8조) 및 벌칙(법 제46조)

1)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법 제8조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1항)

○ (제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2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상해를 입히는 행위(법 제8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2항)

○ (제1호)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제2항)는 제외한다.

○ (제2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제2항)는 제외한다.

○ (제3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제3항)는 제외한다.

○ (제3호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시행규칙 제4조제5항)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제4호)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4조제6항)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법 제8조제3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2항)

4)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법 제8조제4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4항)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2항)

5) 다음 각호의 금지 행위(법 제8조제5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4항)

○ (제1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호)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 (제3호)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4조제8항)는 제외한다.

3. 동물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접수	(동물보호법 제16조) - 소유자외 신고자,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누구든지 신고가능 ※ 신원 노출 절대금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경찰에 신고
↓	
출입·검사	(동물보호법 제39조) - 지자체 또는 경찰은 접수내용을 공유·협조하여 현장 출동 ※ 동물의 소유자등이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 - 동물학대 조사(학대행위 여부 판단 및 증거수집 등) -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	
동물학대 여부 판단	(동물보호법 제8조) - 죽인 학대 행위(판단근거 : 동물의 사체, 흔적, 도구, 독극물 토사물 등 확인) - 상해 신체적 학대(부상, 깡 마른체형, 극도의 불안 증상 등 확인) - 방임·방치(식수 등 미공급, 적정 사육공간 크기, 배설물의 악취, 질병 방치 등) - 학대 정황이 없는 경우 종결처리 후 신고자 및 소유자등에게 안내
↓	
증거수집	- 학대현장, 도구 등 사진 및 영상촬영, 소유자등 및 학대자 인터뷰 진행, 확인서 징구
↓	
피학대동물 보호·격리조치	(동물보호법 제14조) - 상해, 방임·방치 등 학대 시 (긴급 격리조치함) → 동물보호센터 → 보호조치사항 소유자에게 통보 ※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3일 이상 격리조치
↓	
경찰수사	- (살해·상해 학대 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 혐의 인정되는 경우 검찰송치 등 사법 처리
↓	
반환, 소유권취득	- 반환 :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 부담하고 반환 요청시(동물보호법 제18~19조) - 소유권취득 : 소유자가 소유권포기시 지자체가 동물소유권 취득 (동물보호법 제20조)
↓	
모니터링	- 동물을 학대한 자 및 대상시설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추가 학대 예방

4. 동물학대행위 관련 동물보호법령 개정연혁

시행일 (개정일)	구분	내용
'91.7월 ('91.5월)	동물학대신설	① 동물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고통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법 제11조) 1.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른 식용목적 도살, 수렵, 약용, 공업목적으로 사용, 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08.1월 ('07.1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② 도구 약물, 체액 채취, 도박 유흥(민속경기 제외)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신설 ③ 유기동물을 죽이는 행위
	처벌강화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2월 ('11.8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유기동물 알선 구매 행위 추가 ② 동물학대 행위 적용 제한 규정 삭제
	처벌강화	① 5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18.3월 ('17.3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해치사) 추가 ②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추가 ③ 동물학대 행위 영상 촬영 또는 배포 ④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오락·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300만원 이하 벌금) 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① 1년이하, 1천만원이하 → 2년/2천만원 ② 양벌규정 추가 ③ 유기 처벌강화(1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18.9월 ('18.3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애니멀 호딩'* 추가(2년/2천만원) *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19.3월 ('18.12월)	처벌강화	①「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시 5년간 영업 허가·등록 금지
'20.2월 ('19.8월)	동물학대행위 추가	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300만원 이하 벌금)
'21.2월 ('20.2월)	처벌강화	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2년이하, 2천만원이하 → 3년/3천만원 ② 유기 처벌강화(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금)

Ⅲ. 주요 법령

1. 적정한 사육·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제5항)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시행규칙 별표1)

○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보호하며,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유자등 : 소유자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또한, 축종별로 축사내의 조명도, 암모니아 농도 등도 동물 본래의 습성에 맞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시행규칙 별표1의2)

○ 동물이 안전하도록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의학처치의 제공, 목줄로 인한 상해 방지, 적절한 음식 제공 등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동물의 운송 및 반려동물 전달 방법

1) 동물의 운송(법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운송 중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운송을 위하여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전달 방법(법 제9조의2)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을 판매하려고 할 때,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물의 수술(법 제11조)

1)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4.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시행령 제2조)

○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써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가 해당 됩니다.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법 제12조)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법 제47조제2항),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7조제3항)가 부과 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5. 맹견

1) 맹견의 관리(법 제13조의2)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하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외출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7조제1항)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망, 부상 등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2)

2) 맹견의 출입금지 등(법 제13조의3)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법 제47조제1항)

6.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법 제22조)

1)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규칙 제22조)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0~22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인도적인 처리의 시행

○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법 제22조제2항)

7.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 동물보호감시원(법 제40조)

○ 수의사 면허 또는 축산기사 자격이 있거나, 동물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법 제40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2항)

○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동물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법 제41조)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아래 각호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학과 전공.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합니다.(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15조제3항)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6조)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火葬)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2)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5)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6)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